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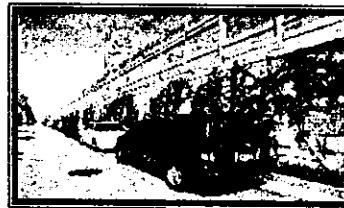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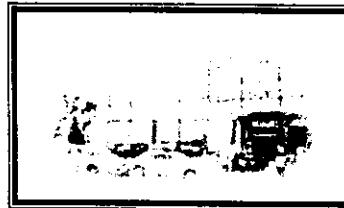
# 마포구시설관리공단(가칭)설립추진계획

요약보고회

건설교통국

# - 목 차 -

- 1. 추진배경**
- 2. 추진경위**
- 3. 설립개요**
- 4. 기대효과**
- 5. 향후 추진일정**



다음페이지로 이동

# 1. 추진배경

마포개발공사는 지역주민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 함으로써 서민가계 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 으나, 당초 설립목적과 달리 구 업무 대행사업 위주로 운영 되고 있으며, 공사 자체 수익사업 개발의 한계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공단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게 됨

## 1-1. 공사형태 지방공기업의 한계성

공사는 공단과 달리 공익성 보다 수익성이 더 강조되는 일종의 영리회사이나, 사업 범위의 제약 등 자체적인 수익사업 개발이 어렵고, 순수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임

## 1-2. 마포개발공사의 사업영역 변화

설립당시 사업



2003년도 사업



2004년도 사업



\* 타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설립유형

공기업법상 의무적용사항인 사업 또는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,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외에는 공사형태의 공기업 사례 없으며, 특히, 구 자치사무 위탁운영 사업의 경우 공사형태 전혀 없음

## 1-3. 사업내용상 공사성격에 부적합

### 공사

- ◆ 민·관의 중간 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간접경영하는 일종의 영리회사
- ◆ 민간출자 가능
- ◆ 공익성 보다 수익성이 강조

\*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영업상의 특자를 실현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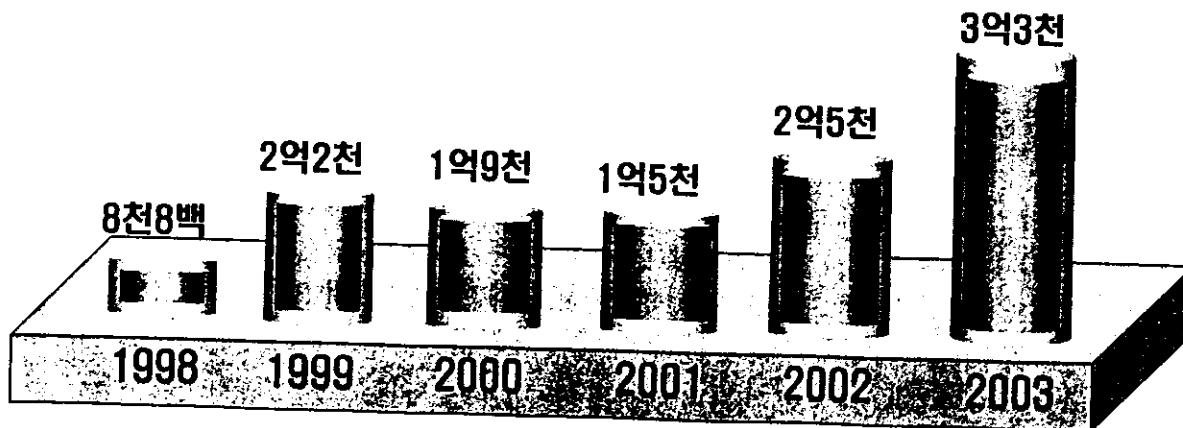
### 공단

- ◆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 대행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
  - ◆ 민간출자 불가
  - ◆ 수익성 보다 공익성이 강조
- ※ 영업상의 특자를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전문성을 살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목적

## 1-4. 부가가치세 납부금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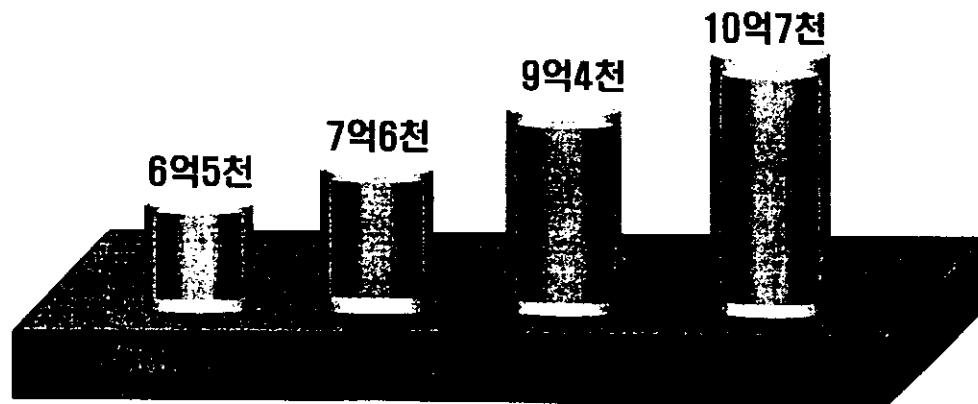
구 자치사무의 수탁운영에 따른 매출증가와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금이 증가되어 구 대행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 수입으로 귀속될 상당부분을 국세로 납부하고 있음.

※ 공단의 사업은 부가세 면제, 공사의 사업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
 (근거 :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제6항)



## 1-5.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대부료 부담액 증가

서울시 공유재산인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부지의 공시지가  
상승에 따른 대부료 부담액 증가로 시장운영사업의 가장 큰  
비용 요인을 공단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부료 감면 또는 무상  
사용 등의 협상여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실익 도모  
[근거: 지방재정법 제82조,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]



## 2. 추진경위

-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2002. 08. 08</u> | 구청장 주재회의시 당면현안사항 보고        |
| <u>2002. 10.</u>    | 마포개발공사 경영평가시 공단전환 권고       |
| <u>2002. 11. 08</u> | 마포개발공사 공단전환 타당성검토용역 보고     |
| <u>2003. 11. 17</u> | 공단설립(전환) 추진 검토             |
| <u>2003. 12. 05</u> | 공단설립추진 전담팀 구성              |
| <u>2003. 12. 10</u> | 행자부 공기업과 방문(공단전환 실무협의)     |
| <u>2003. 12. 11</u> | 공단전환타당성검토 전문기관 의견수렴        |
| <u>2003. 12. 22</u> | 공단설립 추진방향 결정(구청장방침 제1858호) |
| <u>2004. 01. 13</u> |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계약체결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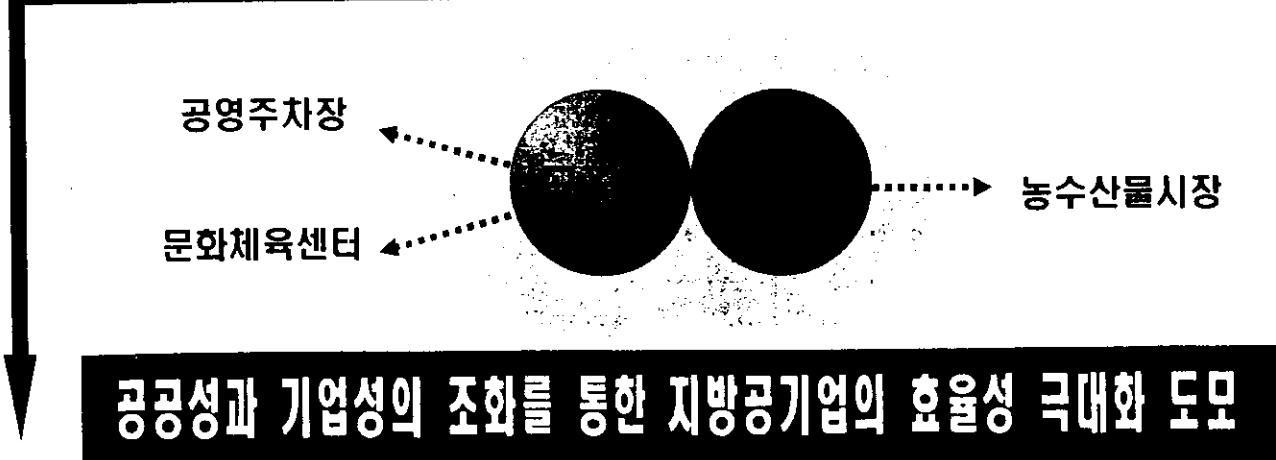
# 3. 설립개요

## 3-1. 설립 목적

공공서비스 사업의 공단위탁으로 전문성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

부가세 면제 및 사업수익을 구 재정에 흡수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

농수산물시장 사용부지의 대부분 감면 또는 무상사용 등의 협상여지 마련



## 3-2. 설립일반

### 설립근거

지방자치법 제137조 (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)

지방공기업법 제76조 (지방공단의 설립·운영)

**명 칭**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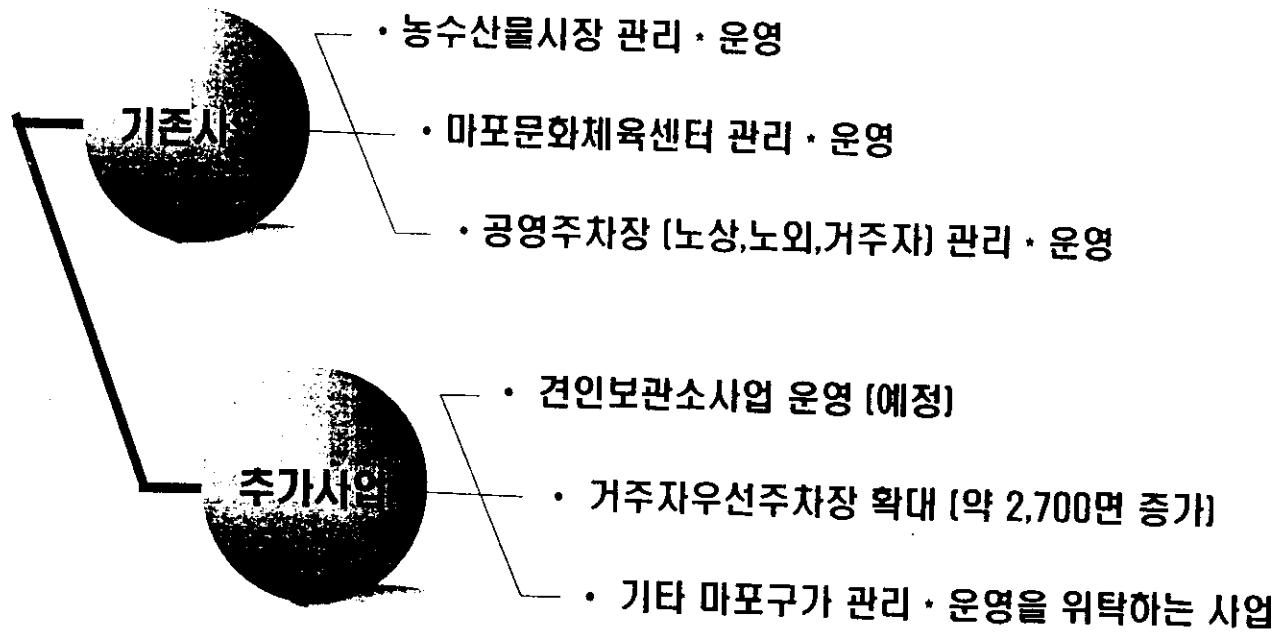
**설립예정일** 2004. 7. (예정)

**공단사무실** 현 마포개발공사 사무실 (예정)

**설립자본금** 5억원 (마포구가 전액 출자)

### 3-3. 사업 범위

#### 마포개발공사 운영사업 및 신규위탁사업



## 3-4. 기구 및 인력

### 기본방향

공단설립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를 기초로 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의  
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

### 마포개발공사 기구

- ◆ 이사회 : 사장, 이사(상임-1, 비상임-3), 감사(비상임1)
- ◆ 기 구 : 1본부(2급), 6개팀(3급)

### 마포개발공사 인력현황

2004.1월 현재

구 分	직 급	총 계	임 원	2급	3급	4급	5급	6급	기능직	고용직	계약직
총 계	정 원	175	2	1	6	9	12	21	4	11	109
	현 원	160	2	1	6	6	8	14	7	11	105

## 4. 기대효과

### 운영효과

- ◆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시설물 관리의 효율적 추진
- ◆ 직접적인 관리를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
- ◆ 자치사무의 공단위탁으로 작은 지방정부 구현

### 재정효과

- ◆ 공단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을 구 재정에 흡수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확충을 꾀함
- ◆ 공단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재정손실 방지
- ◆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는 대부료 경감 또는 무상사용 추진

## 5. 향후 추진일정

2004. 2. 10 공단설립타당성검토 심의위원회 구성

2004. 2. 17 타당성검토용역 결과보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

2004. 2. 20 마포구시설관리공단(가칭) 설립여부 결정-구청장

2004. 3. 02 조례(안)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

2004. 3. 08 조례(안) 구의회 상정

2004. 3. 10 공단설립(전환)추진단 발족 (공사직원 포함)

2004. 3. 정관 및 제규정 작성

2004. 4. 마포개발공사 이사회 개최 (공사해산 결의에 관한건)

2004. 4. 공사해산 승인요구 (인가자 : 구청장)

2004. 5. 공단설립자본금 출자

2004. 5. 정관 및 제규정 승인 (인가자 : 구청장)

2004. 5. 이사장 임명 (임명권자 : 구청장)

2004. 5. 임·직원 승계 또는 채용

2004. 5. 업무 인수인계 (공사 사장  $\Rightarrow$  공단 이사장)

2004. 6. 공사 해산등기 및 공단 설립등기 (해산과 동시 설립)

2004. 7. 이사장취임 및 직원임용장 수여 (공단법인설립 즉시)

2004. 7. 창립이사회 개최 (정관 및 제규정 보고 등)